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39
----------	------

제출년월일 : 2007 . 3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개정이유

- 국가시책에 따른 지역보건사업의 확대시행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모집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업무대행 계약기간을 사업비 내시 기간에 맞게 조정하고 업무대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과 복무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근무실적 평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기부여 및 보건의료사업의 활성화로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확대 시행에 따라 업무대행자 모집 절차의 투명성을 위하여 공개모집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 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국도비가 1년 단위로 내시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 다.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의 지급과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 3조제3항, 제5조제1항)
- 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근무태도가 불성실한자에 대하여 제재 조치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3항)
- 마. 업무대행자의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대가조정 등의 업무에 반영하고자 근무실적 평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역보건법」 제2조, 제9조, 제24조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59조, 제59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9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불임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 2007. 1. 30. ~ 2007. 2. 18.(20일)

기타 참고사항

- 2006년 국가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안내(지침)
- 건강증진사업 계약직(또는 일용직) 인건비 집행에 관한 안내(지침)
- 2007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국·도비 내시 : 27명, 398,240천원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업무대행) ①시장이 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가를 지급하되 지급액, 지급내용, 지급방법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업무대행자가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업무대행자로 선정할 수 없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복무 및 지도·감독) ①업무대행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②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근무실적평가) ①업무대행자의 근무실적평가는 계약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업무대행계약의 연장 및 해지, 업무대행의 대가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계약하여 근무중인 업무대행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업무대행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 · 과		상록수보건소
임 안 자	소장 직위 · 성명	상록수보건소장 장 종 훈
	담당 직위 · 성명	보건행정담당 김 오 천
	담당자 성명 · 전화	김 태희 (행정 5092)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업무대행) ①시장이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의료인과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대행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계약 체결시 그 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p>	<p>제2조(업무대행) ①시장이 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p> <p>②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업무대행계약)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p>	<p>제3조(업무대행계약)①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신 설〉</p>	<p>③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가를 지급하되 지급액, 지급내용,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4조(계약의해지)①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1.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한 때</p> <p>2.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때</p>	<p>제4조(계약의해지)①----- ----- ----- 1----- --- 2----- -----</p>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3. 관계 법령·조례 또는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3----- -----
4. 대행업무에 관한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4----- -----
5. 예산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5----- -----
②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희망일 2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 ----- -----
〈신 설〉	③업무대행자가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업무대행자로 선정할 수 없다.
제5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복무 및 지도·감독) ①업무대행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②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근무실적평가) ①업무대행자의 근무 실적 평가는 계약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근무실적 평가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업무대행의 대가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u>제6조</u> (생략)	<u>제7조</u> (현행 제6조와 같음)
<u>제7조</u> (생략)	<u>제8조</u> (현행 제7조와 같음)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539
----------	------

제안년월일 : 2007. 4. 5.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불분명한 내용을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를 추가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함.(안 제3조제3항)
-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장이 따로”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퇴직급여제도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가를 지급하되 지급액, 지급내용, 지급방법 등은 <u>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 ② (생략)</p> <p>③..... <u>규칙으로.....</u></p>
<p>제5조(복무 및 지도·감독) ①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p> <p>② (생략)</p>	<p>제5조(복무 및 지도·감독) ①..... <u>다만 퇴직급여 제도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u></p> <p>② (원안과 같음)</p>